

# 전액면제와 거래세 중심의 최저한세 도입방안

서 창 순

경상남도 거제시

## 1. 서 론

### 1. 연구배경 및 목적

최근 정부가 328개에 이르는 지방세 감면제도에 대해 대대적인 수술에 착수하고 있다고 각종 언론을 통해 연일 보도되고 있다. 이것은 그만큼 현행 지방세 비과세·감면으로 인한 지방재정 압박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는 사실을 나타내고 있다고 할 것이다.

참여정부의 지방분권 로드맵 7대과제에는 획기적인 재정분권의 추진, 국세의 지방세 이양, 재산세의 과표현실화, 신세목 확대 및 비과세·감면제도 개선 등이 포함되어 있다.

감면의 일몰기한도래에 즈음하여 비과세·감면제도 개선에 대한 정부의 의지는 확고하므로 일선 지방세 업무담당자로서 실무에서 겪은 감면제도의 문제점을 제기하고 개선방안을 찾고자 한다.

감면제도의 주요 문제점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정책 목적으로 지방세법, 감면조례 및 조례 특례제한법에 의거 지방세를 감면하고 있으나 감면수혜대상자는 수익사업 등을 영위하면서 충분한 담세력이 있으나 세법상 면제 대상이므로 지방세를 전혀 부담하지 않는 경우가 다수 존재하고 본래의 감면 취지와는 달리 감면제도를 일시적인 조세회피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이다. 또한 전액 면제대상자

는 과세대상물건을 취득한 후 법정신고기한이후에 취득신고를 하여도 본세가 전액 면제이므로 신고 불성실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배제되고 있다.

따라서 정부가 추진하는 감면제도의 개선방안에는 비과세·감면제도의 당초 취지에 부합하면서 면제 수혜자가 공감하는 최소한의 조세부담 범위 내에서 개별납세자간의 공평과세 구현과 성실한 신고 협력의무 이행을 확보하는 새로운 차원의 대안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 2. 연구범위 및 방향

지방정부의 살림에 쓰일 지방세가 지방정부의 감면목적이 아닌 국가 정책목적으로 감면되면서 ① 지방재정잠식 ② 지방재정 불균등 ③ 지자체 과세지주권 침해 등 갖가지 부작용을 낳고 있다. 이러한 지방정부의 재정손실은 중앙정부가 보전해야 하나 교부세 제도를 제외하고는 적절한 재정보전방안이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세의 최저한세 제도 등의 연구를 통해 지방세 전액 면제로 인한 지방세수 감소를 줄이고 국민개세의 원칙과 세부담의 형평성을 추구하고 기득권화 되어 있는 면제수혜자에 대하여 담세력의 범위내에서 지방세 최저한세 납부와 신고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하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또한 최저한세를 미납할시에는 보통징수방법에 의해 과세하고 체납처분 등의 절차를 즉시 이행하여 감면사후관리의 신속성·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방세 감면에 대한 최저한세 모형을 제시코자 한다.

## II. 최저한세의 이론적 고찰

### 1. 국세의 최저한세

#### 가. 개념 및 취지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조세감면의 중복 적용으로 인해 법인의 조세 부담이 과도하게 줄어드는 것을 막기 위하여 감면 후 세액이 일정 수준(최저한세)에 미달하는 경우 감면 후 세액이 최저한세에 달

할 때까지 조세 감면의 일부를 배제하는 제도를 말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 132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해 법인세는 산출된 과표의 100분의 10내지 15에 미달한 경우, 소득세중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산출된 세액의 100분의 35에 미달하는 경우 조세 감면을 배제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최저한세는 조세감면이 불가피한 경우에도 일정수준 이상의 조세를 부담시키기 위한 제도로 현재 미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sup>1)</sup>Alternative Minimum Tax제도와 유사한 것으로서 1991년부터 시행된 구 조세감면규제법에 새로이 도입되었다. 최저한세 제도는 기업이 특정분야의 산업 활동을 하는데 있어 세제상 감면혜택을 중복적으로 받게 되는 경우 동 감면 내역을 종합적으로 묶어 중복 감면되는 범위를 줄이고 일정 수준 이상의 세금 감면을 제한하는 제도이다.

조세특례제한법에는 조세감면에 대한 개별적인 한도액을 규정하고 있으나, 조세감면을 중복적으로 적용 받게 되면 과도한 조세 감면으로 인하여 소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금을 납부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최저한세 규정에 따라 감면을 종합적으로 규제하고 있는 것이다.

#### 나. 최저한세 관련근거 및 적용대상

(1) 법인세 :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 제1항

- ㉠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 ㉡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법인세(종합과세되는 경우에 한함)

(2) 소득세 :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 제2항

- ㉠ 거주자의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
- ㉡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

구 분	법인세	소득세
적용대상 조세	각 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사업소득(부동산임대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적용대상 조세 감면 등	각 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감면 등	사업소득(부동산임대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의 감면 등
최저한세액	조세특례제한법이 없을 경우의 과세표준×15%(10%)	조세특례제한법이 없을 경우의 과세표준×35%

1) 양도소득세 같이 수입원에 의해 주는 혜택과 공제액에 주는 혜택을 받아서 수입은 있지만 세금액이 없거나 아주 적을 경우를 막기 위해 내는 세금

## 2. 최저한세 적용방식

법인세(소득세) 계산시 최저한세 적용대상 조세감면 등을 적용받은 후의 세액(이하“감면후 세액”) 이 최저한세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세액에 상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감면 등을 하지 않으며 적용방식은 다음과 같다.

### 가. 법인세

#### 《법인세 최저한세 산출식》

최저한세 = MAX(①감면후 세액, ② 감면전 과세표준×15% (중소기업의 경우 10%))

① 감면후 세액 = 산출세액 - 최저한세 적용대상 공제.감면세액

② 감면전 과세표준 = 과세표준 + 최저한세 적용대상 익금불산입 · 준비금 · 비과세소득 · 소득공제

	결산서상 당기순이익
±	세무조정
=	각사업년도 소득금액
-	소득공제등
=	과세표준
	세율
=	산출세액
-	공제.감면세액(ㄱ)
=	차감세액
-	공제.감면세액(ㄴ)
+	가산세
+	추가납부세액
=	총부담세액

#### 최저한세 산출

- 법인세 과세표준 100원, 법인세율25%, 법인세 25원
- 세액감면 또는 공제 : 20원
  - 감면후 세액 : 25원 - 20원 = 5원(법인세) —— ①
  - 감면전 과세표준(100원)×15% = 15원 —— ②
  - 최저한세 = MAX(①감면후 세액, ② 감면전 과세표준×5%)  
= MAX(① 5원, ② 15원)  
= 15원(법인세 납부세액)

## 나. 소득세

### 《소득세 최저한세 산출식》

최저한세 = MAX(①감면후 세액, ② 감면전 과세표준×40%)

① 감면후 세액 = 산출세액 - 최저한세 적용대상 공제 · 감면세액

② 감면전 과세표준 = 과세표준 + 최저한세 적용대상 준비금 · 특례상각 · 소득공제

## 3. 미국의 대체 최저한세(Alternative Minimum Tax)

### 가. 미국의 대체 최저한세 개념

미국은 지방채에 지급된 이자나 조세피난처에 의한 손실과 같은 특정조세우대항목을 위해 조정된 과세소득에 대한 연방세로 소득을 가진 법인들이 면세, 세액공제등을 이용하여 세금을 과도하게 회피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세금감면 항목에 다시 세율을 적용하는 대체 최저한세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 나. Alternative Minimum Tax의 목적

모든 개인이 그들의 소득에 대해 최소한 어느 정도의 조세를 내도록하는 목적으로 고소득의 개인에 대해 정상적인 보고에 의해 조세피난처를 인정한 경우 소득의 많은 부분이 과세되지 못하는 경우에 적용하며 대체 최저한세는 법인세와는 별도로 부담하는 것으로 각종 소득공제나 세액공제에도 불구하고 기업의 실질적인 경제적 소득에 대해 최소한의 세액을 납부하도록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당해 연도에 납부한 대체 최저한세는 다음해의 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으며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계속해서 이월이 가능하다.

### 다. 대체 최저한세 도입 지역

텍사스, 워싱턴, 와이오밍주 등 5개주에서 시행함

### III. 지방세 최저한세의 도입방안

#### 1. 지방세 <sup>1)</sup>최저한세 개념(안)

지방세 최저한세란 ①국가의 정책목적으로 지방세를 전액 면제하는 경우 ②납세자가 담세력이 있고 수익사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라면 ③전액 면제대상에 해당되더라도 적절한 재정보전방안이 마련되기까지 지방세 재정손실을 줄이기 위해 ④감면 수혜자에게 최소한의 세금은 납부토록 하여 ⑤ 개별납세자간의 세부담 형평성을 도모하고 감면의 특권화를 방지하며 전액 면제에 따른 ⑥신고불성실가산세 과세 불가능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을 가진 제도로 정의하고자 한다.

#### 2. 최저한세 도입기준

우선 거래세 분야를 살펴보면

- ▶ 취득세는 취득일로부터 30일 이내의 법정신고기한내에 신고하여야 하고 신고기한 경과후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어야 하나 현재의 지방세법상 취득세 본세가 전액 면제되면 가산세도 면제되므로 전액 감면대상자들에게 신고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할 수 없으므로 신고불성실 가산세가 과세되는 일반납세자와의 조세공평성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 ▶ 등록세는 일반납세자의 경우 단순한 부동산의 변경등기에 대한 등록세도 지방세법 제131조(부동산등기의 세율)제 3항에 규정된 세액(3,000원)을 부담하는 반면 전액 감면대상은 아무런 등록세를 납부하지 않는다는 것은 등기관청의 등기·등록 공시행위에 대한 최소한의 조세부담 측면에서 재고되어야 할 것이다.

#### 가. 지방세 감면중 우선적으로 지방세법에 의한 100%감면대상을 적용

- 감면조례나 조특법에 대한 최저한세 적용도 가능하나 연구분야의 집중을 위해 지방세법 위주로 최저한세 도입방안 연구
- 전액 감면위주로 최저한세 도입 연구

1) 지방세는 국세와는 과표체계 및 감면,공제대상이 다르나 기본적인 도입개념은 전액 면제수혜자에게 최소한의 지방세를 과세하기위한 방안으로 국세의 최저한세와 근본취지는 동일함

**나. 지방세 감면규정(제261조~290조)중 선택적 적용(절별, 조항별 판단)**

- 감면목적, 감면수혜자의 자기효과 입증 실태, 수익사업 영위 정도, 법인 유무 등을 참고

**다. 최저한 세율범위**

최저한 세율은 국세의 법인세 최저한세 세율(15%) 이내인 5%~ 10%로 결정

**라. 최소 등록세액(표 1 참조)**

**마. 세목별 기준금액 산정 근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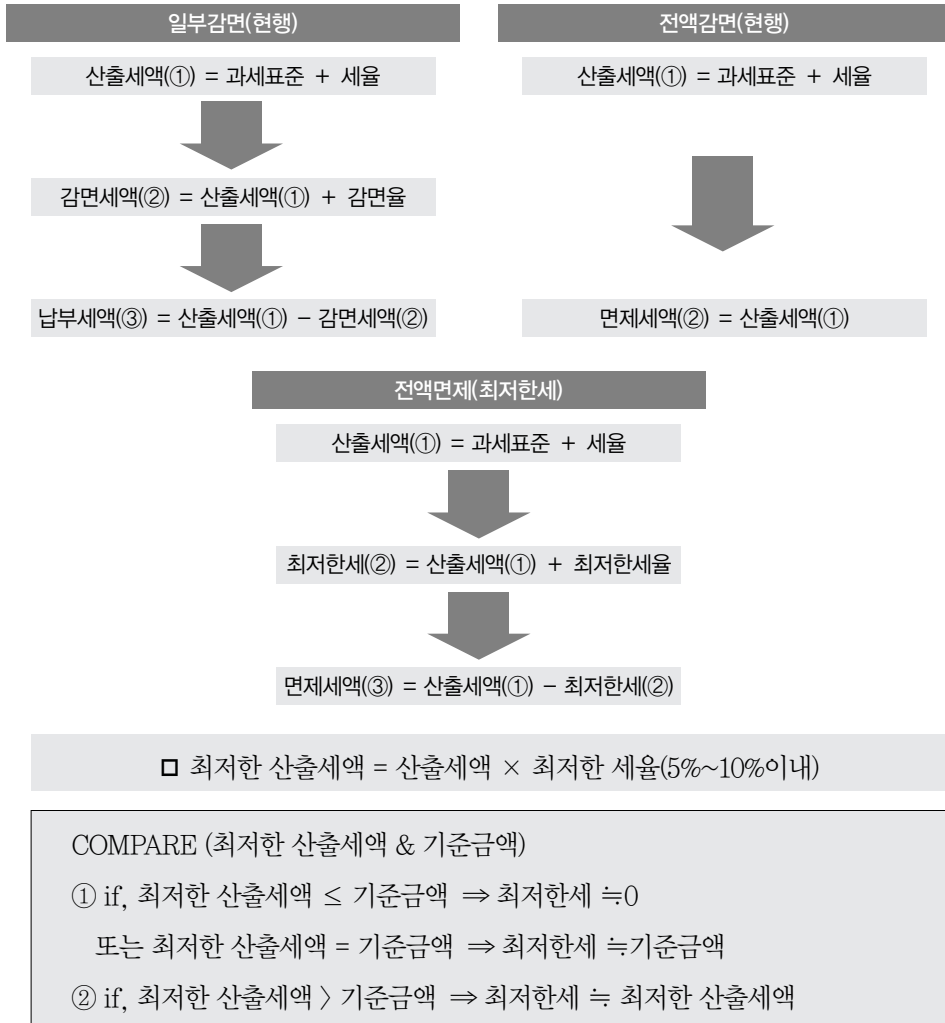
- 공 통 : 조세협력비용과 징수비용을 고려하여 세목별 기준금액 산정
- 취득세 : 면세점(10,000원)및 감면세액과 최저한세율 적용후의 조세부담범위내 산정
- 등록세 : 각 과세대상 조항별 최소 등록세액 기준(표 1 참조)
- 기타 세목 : 소액 부징수 조항이 있는 세목은 소액 부징수 한도로 비교 기준금액을 설정하고 소액 부징수 조항이 없는 세목은 타 세목과의 형평성 유지를 위해 2,000원을 기준금액으로 설정

**3. 세목별 최저한세 과세대상**

- 취득세의 최저한세 적용대상 물건 : 지방세법 제104조(정의) 및 동법 제105조(납세의무자)에 의한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등으로 지방세법의 각 조문별 규정에 의거 100%감면에 해당되는 것을 최저한세 적용대상으로 감면대상자를 납세자로 함
- 등록세의 최저한세 적용대상 : 지방세법 제104조 및 동법 제105조에 의한 과세대상중 부동산(제131조),선박(제132조),자동차(제132조의 2),건설기계(제132조의 3),소형선박(제134조),항공기(제135조)에 한하여 지방세법의 각 조문별 규정에 의거 100%감면에 해당되는 것을 적용
- 기타 세목 : 각 세목별 과세대상과 동일

## 4. 세목별 도입방안

### 가. 구성체계



◆ 최저한세에 대하여 신고불성실 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 과세



## 나. 거래세 기본개념

- (1) 취득세는 지방세법 제113조(면세점) 제1항에 의거 취득가액이 50만원 이하인 경우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므로 100%감면에 대한 지방세 최저한세 적용시에도 취득가액이 5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동일한 규정을 적용하고 산출세액에 “최저한 세율”을 곱하여 산출한 “최저한 산출세액”이 10,000원미만이면 “최저한세”를 징수하지 아니하고 최저한 산출세액이 10,000원이면 최저한세를 10,000원으로 하고, 최저한 산출세액이 10,000원을 초과하면 최저한세는 최저한 산출세액으로 한다.
- (2) 등록세는 100%감면세액에 최저한 세율(5%이내)을 곱하여 산정한 최저한 산출세액이 지방세법 제131조(부동산), 제132조(선박), 제132조의 2(자동차), 제132조의 3(건설기계), 제134조(소형선박), 제135조(항공기)등의 각항에 규정된 “최소 등록세액” 미만일 경우 최저한세는 “0”로 등록세를 징수하지 아니하고 최저한 산출세액이 최소 등록세액과 동일할 경우 최저한세는 최소 등록세액으로 하고 최저한 산출세액이 최소 등록세액을 초과하면 최저한세는 최저한 산출세액으로 한다.

## 다. 세목별 최저한세 계산

### (1) 취득세 최저한세

□ 최저한 산출세액 = 취득세 산출세액 × 최저한 세율(5%~10%이내)  
 if, 최저한 산출세액 < 10,000 ⇒ 최저한세 ≒ 0  
 if, 최저한 산출세액 = 10,000 ⇒ 최저한세 ≒ 10,000  
 if, 최저한 산출세액 > 10,000 ⇒ 최저한세 ≒ 최저한 산출세액

- ◆ 최저한세에 대하여 신고불성실 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 과세
- ◇ 취득세 계산방식(1) : 과표 500,000원  
 취득세 산출세액 = 10,000원  
 최저한 산출세액(10,000원 × 10% = 1,000원)  
 최저한세 ≒ 0원(if, 최저한 산출세액 < 10,000 ⇒ 최저한세 ≒ 0)

- ◇ 취득세 계산방식(2) : 과표 5,000,000원  
 취득세 산출세액 = 100,000원  
 최저한 산출세액(10,000원 = 100,000원×10%)  
 최저한세 ≒ 10,000원(if, 최저한 산출세액 = 10,000 ⇒ 최저한세 ≒10,000)
  
- ◇ 취득세 계산방식(3) : 과표 50,000,000원  
 취득세 산출세액 = 1,000,000원  
 최저한 산출세액(100,000원 = 1,000,000원×10%)  
 최저한세 ≒ 100,000원(if, 최저한 산출세액 > 10,000 ⇒ 최저한세 ≒ 최저한 산출세액)
  
- ◇ 취득세 계산방식(3-1)  
 신고불성실 가산세 = 최저한세 × 신고불성실가산세  
                           = 100,000원×10%(30일 초과) = 10,000원

**(2) 등록세 최저한세**

□ 최저한 산출세액 = 등록세 산출세액 × 최저한세율(5%~10%이내)  
 if, 최저한 산출세액 < 최소 등록세액 ⇒ 최저한세 ≒0  
 if, 최저한 산출세액 = 최소 등록세액 ⇒ 최저한세 ≒ 최소 등록세액  
 if, 최저한 산출세액 > 최소 등록세액 ⇒ 최저한세 ≒ 최저한 산출세액

- ◇ 등록세 계산방식(1)  
 등록세(부) 산출세액 = 3,000원  
 최저한 산출세액(300원 = 3,000원×10%)  
 최저한세 ≒ 0원(if, 최저한 산출세액 < 최소 등록세액 ⇒ 최저한세 ≒0)
  
- ◇ 등록세 계산방식(2)  
 등록세(부) 산출세액 = 30,000원  
 최저한 산출세액(3,000원 = 30,000원×10%)  
 최저한세 ≒ 3,000원

(if, 최저한 산출세액 = 최소 등록세액 ⇒ 최저한세 ≒ 최소 등록세액)

◇ 등록세(부) 계산방식(3)

등록세(부동산) 산출세액 = 1,000,000원

최저한 산출세액(100,000원 = 1,000,000원 × 10%)

최저한세 ≒ 100,000원

(if, 최저한 산출세액 > 최소 등록세액 ⇒ 최저한세 ≒ 최저한 산출세액)

〈표 1〉 최소 등록세액

과 세 대 상		최소 등록세액(세율)	비 고
제131조(부동산)		3,000	정률, 정액
제132조(선박)		7,500	“
제132조의 2(자동차)		7,500	“
제132조의 3(건설기계)		5,000	“
제134조(소형선박)		3,000	“
제135조(항공기)	5,700kg이상	0.01%	정률
	그외	0.02%	정률

※ 항공기에 대한 최소 등록세액 규정 필요: 10,000원이상(안)

(3) 기타세목 최저한세 : 재산세, 사업소세, 자동차세, 지역개발세, 주민세(균등할 제외)

□ 최저한 산출세액 = 산출세액 × 최저한세율(5%~10%이내)

if, 최저한 산출세액 ≤ 2,000 ⇒ 최저한세 ≒ 0

if, 최저한 산출세액 > 2,000 ⇒ 최저한세 ≒ 최저한 산출세액

(4) 면허세 : 면허 건당 과세로 최저한세의 실효성이 없음

5. 조문별 구성방안

가. 일몰기한 경과후 감면조항 개정 및 최저한세 조항 신설

2006.12.31일 완료되는 현행 감면조항에 2007년부터는 조문별로 최저한세 과세조항을 신설하

여 새로운 감면제도 시행

#### 나. 조문별 최저한세 도입(예)

- 농어민 지원을 위한 감면(제1절) : 지방세법 제262조 제2항(20톤미만 소형선박)  
 현행개정안(최저한세)제 262조(농기계류 등에 대한 감면) ② 20톤미만의 소형선박에 대하여는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및 공동시설세를 면제한다.

현행	개정안(최저한세)
제 262조(농기계류 등에 대한 감면) ② 20톤미만의 소형선박에 대하여는 취득세 · 등록세 · 재산세 및 공동시설세를 면제한다.	제 262조(농기계류 등에 대한 감면) ② 20톤미만의 소형선박에 대하여는 취득세 · 등록세 · 재산세 및 공동시설세의 <u>산출세액에서 최저한세를 제외하고 면제한다.</u>

- 공공법인등에 대한 지원(제4절) : 지방세법 제288조(학술연구단체 등)

현행 체계(지방세법)	새로운 체계(지방세법)
① 제288조(사회단체등에 대한 감면) ②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중략)— 그 고유업무에 직접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이하 생략)—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제288조(사회단체등에 대한 감면) ②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중략)— 그 고유업무에 직접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의 <u>산출세액에서 최저한세를 제외하고 면제하고</u> —(이하 생략)—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 IV. 최저한세의 기대효과

### 1. 지방세 감면 및 가산세 체계의 획기적인 변화

#### 가. 신고불성실가산세 체계의 개선

- 현행 지방세 가산세는 본세가 전액 면제면 본세에 대한 가산세를 과세할 수 없으나 최저한세 도입으로 전액 면제에 대한 신고불성실가산세의 과세가 가능해짐

#### 나. 지방세의 전액 면제규정의 변화(예)

대부분의 감면규정(현행)	최저한세의 감면규정(개선(안))
“(중략)”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생략)—”	“(중략)”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산출세액에서 최저한세를 제외하고 면제한다. —(생략)—”

### 2. 신고불성실가산세 과세로 인한 조세공평성 개선

- 지방세 감면에 최저한세를 도입할 경우 전액 면제대상 납세자에게 최저한세와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취득신고시 최저한세에 대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추가하여 과세할 수 있으므로 감면대상 납세자의 취득신고 관행과 일반 납세자와의 공평과세 문제를 개선할 수 있음

### 3. 지방세수 증대로 지방재정 보전 기능 수행

#### 가. 최저한세로 인한 지방세 증가 예상액

- (1) 세목별 최저한세 도입가능 분류표에 의거 지방세 증가 예상액은 최저한세율을 10% 적용시 별도의 세목신설 없이 『720억의 지방세 증가』 효과 발생

(단위 : 백만원,%)

징수액(a)	전 체 감면세액(b)	전액 면제 세 액(c)	2)최저한세 예상액(d)	비율(%)	
				d/b	d/a
34,201,705	897,412	792,149	72,013	8.02%	0.21%

(2) 공공법인지원을 위한 감면(지방세법 제286조~288조)에 대한 최저한세 예상액 : <표 3>의 공공 법인지원을 위한 3)거래세 전액 면제액이 226억원이므로 거래세에 대한 4)최저한세는 『21억 정도 징수』가능

<표 2> 공공법인지원을 위한 감면현황

(단위 : 백만원)

조문별	항별	호	계	취득세	등록세
합계			22,650	13,493	9,157
286	1		1,392	684	708
286	2		416	293	123
286	3		126	125	1
287		1	1,988	218	1,770
287		2	1,294	1,117	177
287		3	0	0	0
287		4	1,959	1,451	508
287		5	11	0	11
287	2		3,201	2,039	1,162
288		1	71	21	50
288		2	2,070	1,126	944
288		3	3	2	1
288		4	58	327	131
288		5	0	0	0
288		6	409	153	256
288		7	0	0	0
288		8	67	37	30
288	2		9,029	5,772	3,257
288	3		156	128	28

자료 : 행정자치부, 2005년 지방세 연감(p.486참고)

2) 최저한세 예상액(d) = {전액 면제세액(c) ÷ 1.1} × 0.1

3) 공공법인지원을 위한 감면은 지방세법 제286조 제1항을 제외하고 제286조 제2항~제288조 제3항까지 취득세 · 등록세등이 대부분 전액감면임

4) 최저한세 (d) = {전액 면제세액(c) ÷ 1.1} × 0.1

(3) 최저한세로 도입시 지방세수 증가 예상액이 지방세 신장율에 미치는 영향

○ 2004년 지방세 징수액 신장율이 3.2%이므로 최저한세 도입시 예상 지방세 신장율 3.44%이므로 『신장율을 0.24%증가』시킴

○ 최저한세 도입시 비과세·감면비율 <표 4>를 전년대비 『0.23% 감소』시킴

<표 3> 지방세 신장율 현황

단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4년 (최저한세)
금액	억원	206,006	266,649	315,257	331,329	342,017	342,737
신장율	%	10.8	29.4	18.2	5.1	3.2	3.44(+0.24)

자료 : 행정자치부, 2005 지방세 연감,

<표 4> '04년 기준 최저한세 도입시 비과세·감면현황 변동 비율

(단위 : 억원)

구분	지방세 징수총액 (A)	비과세 감면액 (B)	점유율 (A/B)
당 초(a)	342,017	32,150	9.40%
최저한세 도입시(b)	342,737	31,430	9.17%
증 감 율(b-a)	720	-720	-0.23%

자료 : 행정자치부, 2005 지방세 연감, 2006 경남 지방세연찬회자료(하동군) 인용

(4) 재정보전 기능 : 최저한세는 전액 면제로 발생하는 자치단체의 지방세 세수 손실을 줄이는 역할 수행

#### 4. 면제수혜자에 대한 감면의 특권화 및 악용 관행 개선

○ 최저한세의 도입으로 전액면제대상자도 담세력의 범위내에서 일정액의 지방세를 납부하도록 강제하므로 면제 수혜자에 대한 특권의식 및 조세회피수단으로의 악용하는 관행 개선

## 5. 감면 사후관리의 효율성 향상

가. 조세채권의 확보 : 감면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것이 감면제도를 조세회피수단으로 악용하는 행위로 전액 면제대상납세자에게 최저한세를 과세할 경우 최저한세액에 대한 조세채권이 확보되므로 최저한세 미납부시에 체납처분 등의 절차를 조기에 실시하여 감면사후관리 효율성 향상에 기여

나. 감면자료의 집계 및 관리의 정확성 향상 : 감면에 대한 최저한세 과세로 감면자료의 집계와 자료관리에 정확성을 기하게 되므로 향후 시행하게 될 지방세 조세지출예산제도의 정착에 기여할 것임

## Ⅶ. 결 론

지방세 전액 감면에 대한 최저한세 제도도입은 별도의 세목 신설이나 추가 징세비용의 수반 없이 지방세 세수증대가 기대되므로 자치단체의 지방재정 향상과 지방세 감면체계의 획기적인 변화를 유도하여 감면사후관리와 감면대상 수혜자의 납세의식 개선에 기여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최저한세 제도의 기본적 이해와 개념도출을 위해 연구분야를 전액 면제와 거래세 부문 위주로 하였으나 단순한 변환으로 보유세 및 기타세목도 동일한 방식으로 접근이 가능할 것이다.

경상남도의 2006년 3월 지방세 업무연찬회에 참여했던 지방세정인들의 논의 과정에서 많은 선.후배 동료분들이 미래 지방세의 발전과 지방세 감면제도의 혁신적인 개선을 위해서는 다양한 방식의 대안이 필요하며 그 중 지방세 최저한세 도입연구는 반드시 검토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이번 전국 지방세업무연찬회에서 논의되는 최저한세 도입논의가 단순한 개념제시로 머물지 않고 우리 지방세정인이 함께하는 공동연구과제로써 지방세 감면제도 개선방안의 하나로 채택되어 적용 가능한 최저한세의 다양한 모델을 제시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 ☺